



## “CODEX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위원회” 국제회의를 참가하고

정 건 섭  
(표준화연구부)  
시험규격실

### 1. 서 언

필자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 Lakeside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CODEX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위원회” 제 1차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국제간 원활한 식품교역을 도모하면서, 식품에 의한 위생상 위해발생을 최소화하여 인류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품질보증을 위한, 식품수출입검사와 인증제도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되었으며,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의 식품검사부 Director인 Digby Gascoin씨에 의해 주재되었다. 본 회의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체코 슬로바키아, 덴마크, 필란드, 불란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미국(25개국)과 European Communities(EC), 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GAT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 Union(IOC),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IDF), International Union of Food and Allied Workers(IUF),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IS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FAO, WHO (8개 단체)에서 총 147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표준기공과장(정상원 과장), 보건사회부 위생국 식품유통과장(정도영 과장), 한국식품연구소 연구부장(송인상

박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시험규격실장(정건섭 박사)로 구성되었다.

### 2. 회의내용 및 결과

#### 가. 본 위원회의 배경 및 목표

본 “CODEX 식품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위원회”의 설치배경은 식품의 국제간 교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식품검역이 기술적 장벽으로 사용되어 식품교역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수출입 식품에 의한 인간의 위생상 위해 발생이 야기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설정등을 다룬 전문위원회를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1991년 3월의 “WHO/FAO합동회의(로마)”의 제안을 받아들여 1991년 7월 CODEX 총회에서 설치하도록 결정되어진 위원회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식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검사 및 인증제도를 국제규범화함으로써 식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여 식품의 원활한 국제간 교역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원회의 목표로 하고 있다.

#### 나. 회의 내용 개요

금번 회의는 제 1차 회의로 본 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의 기본원칙등 기본적인 원칙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

였으며, 논의과정에서는 식품수출국가들과 수입 국가들 간의 의견차이가 일부 노출되기도 하였다. 논의된 사항은 제 20차 CODEX총회 (1993년 6월 28일~7월 7일, 스위스 제네바 개최예정)에 상정되며, 총회의 결정사항을 다시 1993년 11월에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될 제 2차 “CODEX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 안건별 내용**

제 1차 “식품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위원회” 회의 최종보고서 내용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식품 KS 정보”(1992년 제4호, 통권 19호)에 실을 예정이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 회의중 논란이 많았던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위원회 업무권한(의제 4)와 식품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원칙(의제 6)의 초안만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1) 식품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위원회 업무권한 초안**

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공정한 교역 관행 및 국제간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방법 및 과정을 조화시키는 견지에서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및 지침서의 작성.

② 식품이 필요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보증해주는 식품의 수출국 및 수입국 관련 당국이 실제 업무 수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 및 지침서의 작성.

③ 식품이 필요한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것을 보증하고 다자간/쌍무협상에 의해 식품의 교역을 원활히 하는데 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제도의 적용에 대한 지침서의 작성.

④ 국제간 조화라는 견지에서, 각국이 요구하는 공식인증서의 서식, 표현, 언어에 대한 지침 및 기준의 작성.

⑤ 식품 수출입 관리와 관련된 정보교환에 대한 권고안 작성.

⑥ CODEX와 기타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분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연결창구 역할.

⑦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총회가 지시하는 기타사항의 검토.

**2) 식품 수출입검사와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원칙 초안**

**① 서 언**

• 검사 및 인증제도는 식품관리의 수단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공급되는 식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부분적으로 식품관리 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 좌우된다. 예를들어 식육 및 육제품등 세계적인 식품교역중 많은 부분을 검사 및 인증제도의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및 인증의 요구는 식품의 교역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제도의 적용 및 방법은 적절한 원칙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품의 검사는 생산 및 유통중 어떤 단계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미생물 오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식품의 경우 수확, 가공, 저장, 운송에 대한 검사 및 기타 관련활동은 단지 식품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인 방법일 수 있다.

사용된 저장방법에 따라, 소매단계까지의 계속적인 검사관리의 유지가 필요할 수 있다. 검사제도는 식품 자체에 또는 제조방법 및 생산 및 유통과정 중 사용된 설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 몇개의 식품규격, 특히 표지 또는 다른 방법에 의거 식품의 특징을 기술하는데 적용되는 규격은 최종 판매전 유통과정중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저장방법이 유통과정중 파손(즉, 통조림의 파열, 부패가 용이한 식품의 비적절한 냉장 등)의 위험이 있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

•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의 계획 및 적용에서, 본 제도는 소비자 보호 및 교역의 원활화라는 최상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검사란 공정중 및 최종제품의 검사를 포함하여 원료, 가공공정 및 유통관리를 위한 식품의 검사이다. 그러나 인증이란 이와 같은 관리제도하에서 생산된 식품이 특정한 규격이나

국가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것을 해당기관이 보증하는 방법이다. 수출식품의 인증이란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검사,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둘다에 근간을 둘 수 있다.

#### ② 기본원칙

•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는, 소비자를 식품에 의한 위해발생 및 거짓된 유통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정확한 상품설명을 통하여 교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식품 및 제조공정이 관련 규격에 일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언제든지 사용되어야 한다.

#### ③ 목적의 적합성

• 검사 및 인증제도는, 요구되는 적절한 보호 수준의 결정이라는 면을 고려하여, 이들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어야 한다.

#### ④ 위해평가

•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기 위한 검사제도는 그때 상황에 적절한 객관적인 위해평가를 기초로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한다. 사용된 위해평가방법은 가능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과 일치되어야 한다.

• 위해평가는 현재 적용되는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각국은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검사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검사제도는 평가된 위해에 따라 특정제품 및 제조공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위해평가를 실시하거나 또는 동등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식원성 질병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의 주장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비차별성

• 각국은 교역상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환경에 적절하다고 간주된 위해수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도적 또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제거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⑥ 효율성

• 검사 및 인증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 및 관련 식품산업 및 정부가 치루어야 할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필요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의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조화

• 회원국은 각국의 검사 및 인증제도의 근본요소로, 필요한 경우 CODEX 국제규격, 권장안 및 지침서(또는 회원이 모든 나라에 개방된 국제기구의 것)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국은 CODEX 위원회와 기타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CODEX 관련규격의 제정, 수락 및 검토의 촉진과 원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⑧ 동등성

• 각국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검사/인증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동등성이라 부른다. 누구보다도 수출국은 사용하려는 제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 ⑨ 투명성

•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의 운영은 소비자, 이들의 대표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자세히 공개되어야 한다.

• 수입국은 현행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될 예정인 요구사항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두어 공표되어야 한다. 수출국의 의견 및 특히 개발도상국의 의견은 최종안을 확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 수출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생산 및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수입국은 수출국의 요구가 있을 때 식품관련 규격의 일치여부와 관련된 그들의 결정의 근거를 수출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 수입국의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때, 수출국

은 그들의 관련 검사 및 인증제도의 실제 집행 상황에 접근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특별 및 개별대우**

•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의 계획 및 적용에 있어서, 수입국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⑪ 관리 및 검사방법**

• 수입국은 요구사항에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설정을 이유없이 늦추지 않고 제정하여야 한다.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정보 요구 및 수수료는 논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에 한정하여야 한다.

**⑫ 인증의 효력**

• 수출식품을 인증하는 국가와 수출 인증서에 의존하는 국가는 인증제도의 효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확인은 품질보증제도의 평가가 자격을 갖춘 검사관에 의해 실시되고 검사가 주요 관리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판정이 수입국의 요구와 관련이 있고 인증서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가 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다.

**3. 정책건의사항**

**가. 한국 CODEX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강화**

• 금번 제 1차 회의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지침서 및 권고안이 작성될 예정인 앞으로의 회의결과는 우리나라의 식품교역 및 수입식품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앞으로 당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뿐만 아니라 CODEX 국제식품 규격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규격 및 기준 등 제반사항은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상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농수산 생산방향, 더 나아가서 식품의 국제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가 공동 주관하고 외무부, 상공부가 자문을 담당하는 한국 CODEX 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됨, 한국 CODEX위원회 산하에는 과제별로 (식품표시, 식품첨가물, 식품중 농약잔류 등 일반공통과제 8분야, 가공과채류, 유지류 등 식품규격 관련과제 17분야,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등 5개지역위원회) 전문적인 사항을 다룰 전문위원을 두고, 이들을 총괄 관리할 사무국을 두며 소요예산은 주관부서 공동부담으로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나. CODEX가 기 제정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연구사업 확대**

• 앞으로의 당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UR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현재 기존규격 및 기준에 설정된 식품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식품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기준과 13개 식품군 177개 식품에 대한 국제 규격에 대한 수락압력이 가증될 것이므로, 이의 수락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구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다. CODEX 일반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

• 당 분과위원회는 기타 일반 분과위원회와 깊은 업무상 연관이 있고, CODEX 일반분과위원회에서는 현행규격, 기준의 개정 및 새로운 규격기준에 대한 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지금까지는 총회 외에는 예산상 이유 때문에 거의 참석을 하고 있지 못함).

- 참여가 요망되는 일반 분과위원회
  -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 CODEX 농약잔류 분과위원회
  - CODEX 수의약품 잔류 분과위원회
  -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
  -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
  - CODEX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
  - 기타 아국에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과 관련 되는 CODEX 식품규격 분과위원회

#### 라. CODEX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자료수집 방안 강구

• CODEX의 규격, 기준 설정에는 WHO, FAO, ISO 등 국제기구의 보고사항이 적극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WHO 파견관 및 FAO파견관 등을 통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요망됨.

• 우리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국제기구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 FAO/WHO 합동 잔류농약회의(JMPR)
-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관한 국제자문그룹단(ICGFI)
- FAO 산하 식품관리 및 소비자 보호국(FC & CP)
- WHO 산하 건강 및 환경위원회(Commission on Health & Environment)

#### 마. CODEX국제식품규격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업계 교육강화

• 아국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CODEX 국제식품규격의 제한적인 수락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CODEX 국제규격 수락이 식품·검역의 효율성을 높여서 아국에 이익이 됨, 또한 식품산업적 측면에서도 식품의 대외국 수출에 따른 비관세장벽이 낮아지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CODEX 국제식품규격에 대한 대국민,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의 강화와, 식품업계에 CODEX 국제식품 규격에 맞는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요구됨.

• 이와같은 대국민 홍보와 업계 교육은 CODEX 한국위원회 사무국 주관으로 체계적인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